경상북도 공고 제2025 - 410호

경상북도 [2025년 식문화개선홍보] 사업 계획 공고

지방보조금법 제7조,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**2025년 식문화개선홍보**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7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 : 음식문화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수준 향상

나. 지 원 액 : 30,000천원(식품진흥기금)

다. 사업기간 : 2025. 3월 ~ 2025. 12월

라. 사업내용 : 음식문화개선사업(음식점위생등급제, 경상 북도 으뜸음식점, 안심식당) 및 덜어먹는 식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, 언론 홍보 SNS 홍보 등

2. 신청자격 등

가. 신청자격

-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,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사업 기획 및 수행이 가능하고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나. 지원제외 대상

- 영리목적 단체,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
- 개인,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
- 사업 활동(수혜) 지역이 특정 1개 시·군에 한정된 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 하게 사용한 단체
- 2025년에 동일사업을 위해 道 및 사군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
- 기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지원범위 및 기준

-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 (운영비, 자본적 경비 제외)
- 자부담 비율은 보조사업자 자율 편성

3. 사업계획 반영사항

가. 음식문화개선 콘텐츠 제작·홍보 운영 사항 나. 그 밖의 경상북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

4. 지원신청서 접수

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2. 27. (목)~ 3. 13.(목)

나. 접수마감 : 2025. 3. 13.(목) 18:00시한

다.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템e) 접수

라. 접 수 처 : 경북도청 보건정책과

마.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,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

※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바. 문 의 : 경북도청 보건정책과(☎054-880-3845)

5.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

가. 선정방법 : 「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·결정

나. 선정기준

- 사업의 공익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,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
-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,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·개발성
-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
- 다. 선정결과 발표 : 개별통지
 - * 통보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

6. 보조금 지급, 사업정산 및 평가

- 가.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, 사업비 규모,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
- 나. 사업비(자체부담예산 포함)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(클린카드) 사용 집행 및 보템e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및 정산
- 다.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 (자체부담예산 포함)
- 라.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

7. 기타

- 가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
- 나.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,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.
- 다. 보조금의 지원대상, 대상사업, 제외대상,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
- 라.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